

약관

교보상개 8122-163('98.9.12) 인가후 판매('98.10.1)

한국금융업계최초
ISO 9001 인증 획득
보험상품개발 시스템완벽구축



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

이 보험은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교보생명**

인 사 말 씀

이땅에 교육보험의 씨를 뿌린 저희 교보
생명을 항상 성원해 주시는 계약자 여러분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보생명은 계약자 여러분의 끊임없
는 성원에 힘입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국내
에서 가장 내실있고 세계에서조차 앞서가는 생
명보험 회사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저희 교보생명은 이러한 튼튼한 내실기반
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계약자 여러분에
게 보다 많은 이익을 되돌려 드리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가꾸고 지켜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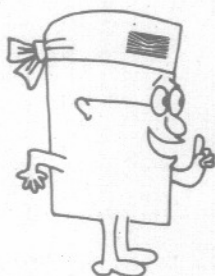
감사드립니다.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목 차

● (유의사항).....	2
● (주요보험용어 설명)	3
● (상품구성 및 지급예시)	4
● (약관 주요내용 설명)	10
1. 계약의 효력	10
2. 계약의 무효	10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1
4. 가입자의 고지의무	11
5. 주소 변경통지	12
6.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12
7. 보험금 등 지급절차	13
8. 계약내용의 변경	13
● (생명보험과 세제안내).....	14
1. 보험료 소득공제	14
2. 금융재산 상속공제	14
●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 약관).....	15
●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 탑승재해보장특약 약관).....	44
●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 재해치료비특약 약관)	59
●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 재해입원특약 약관)	77
● (신체부위 설명도)	88

유의 사항



본 약관은 보험계약자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한 제
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꼭 읽어보시고 특히 다음
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 등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정확
하게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건강상태나 직업 등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3. 생명보험은 은행예금과 달라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
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시면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보험계약에 관한 상담은 본사의 고객센터부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 영업소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험용어 설명

- **보 험 약 관** : 계약의 성립부터 만기시까지의 계약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통 보험약관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계약과특약** : 보험약관중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내용을 주계약이라 하며,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계약과 다른 특별한 약속을 기재하여 주계약에 부가하는 계약내용을 특약이라 함.
- **보 험 증 권** : 계약의 성립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계약증서
- **보 험 계 약 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 사람
- **(주)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생사 등이 보험의 대상이 됨.
- **보 험 수 익 자** : 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보 험 기 간** : 보험회사가 보장을 행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됨.
- **책 임 개 시 일** : 계약상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
- **계 약 일** : 통상계약 체결시의 책임개시일과 같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날을 계약일로 함.
- **계 약 해 당 일** : 계약후의 보험기간중에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계약일의(월 단위의 경우에는 매월)해당일
- **책 임 준 비 금** : 장래의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적립되는 적립금
- **해 약 환 금 금**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상품구성 및 지급예시

1. 상품구성 및 코드

가. 상품구성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 약관

- + 【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 탑승재해보장특약 】
- + 【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 재해치료비특약 】
- + 【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 재해입원특약 】

(단, 【 】는 선택부가)

나. 상품코드

구 분	판 매 코 드
남 자	30684 - 00
여 자	30685 - 00

2. 보험금등 지급예시

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기준)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8,000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교통재해 장해연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1급 : 매월 300만원× 10년 제 2급 : 매월 150만원× 10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3급 ~ 제 4급 : 1,000만원 제 5급 ~ 제 6급 : 5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일반재해 장해연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1급 : 매월 100만원× 10년 제 2급 : 매월 50만원× 10년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3급 ~ 제 4급 : 600만원 제 5급 ~ 제 6급 : 300만원
만기축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3년만기 : 이미 납입한보험료의 70% 5년만기 : 이미 납입한보험료의 80% 7, 10년만기 : 이미 납입한보험료의 90%

※ 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나. 탑승재해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휴일 차량탑승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 4,500만원
휴일 무보험· 뺑소니차량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무보험 차량·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 4,500만원
휴일 항공기·선박· 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억 2,000만원
평일 차량탑승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7,000만원
평일 무보험· 뺑소니차량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무보험 차량·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7,000만원
평일 항공기 ·선박·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 2,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휴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무보험· 뺑소니차량,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4,000 만원
휴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 만원
휴일 교통재해 장해연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급 : 매월 150만원× 10년 2급 : 매월 75만원× 10년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급 ~ 4급 : 500만원 5급 ~ 6급 : 250만원
휴일 일반재해 장해연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급 : 매월 50만원× 10년 2급 : 매월 25만원× 10년
휴일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급 ~ 4급 : 300만원 5급 ~ 6급 : 150만원

다. 재해치료비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골절치료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이 발생하였을 때	(골절발생 1회당) 30만원
응급치료자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
수술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하였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 상기의 지급사유중 골절치료급여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될지라도 재해발생 1회당 1회만 지급합니다.

라. 재해입원특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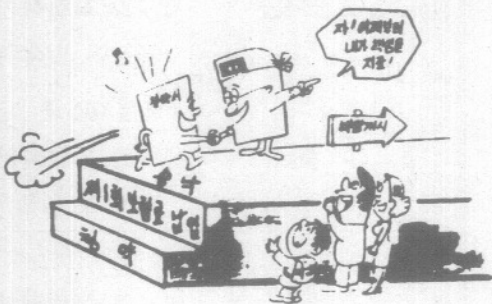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입원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1만원

약관 주요내용 설명

1. 계약의 효력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승낙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나. 만15세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용 및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는 다음 경우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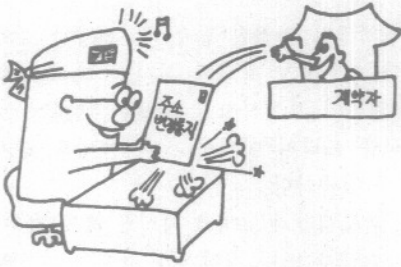
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가입자의 고지의무

생명보험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서 상호보장하여 서로 돕는 제도입니다. 보통 가입시 처음부터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이나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계약하면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건강상태, 신체장애상태, 직업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주소 변경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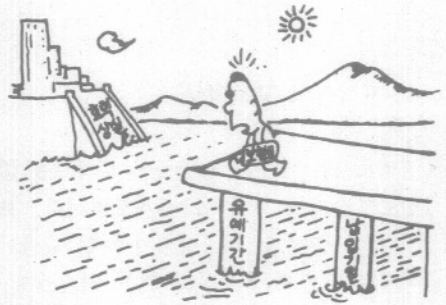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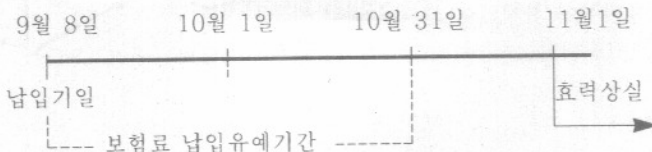
6.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계약자는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늦어도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유예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계약의 효력상실 상태에서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도해





7. 보험금 등 지급절차

가. 회사는 수익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소정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나.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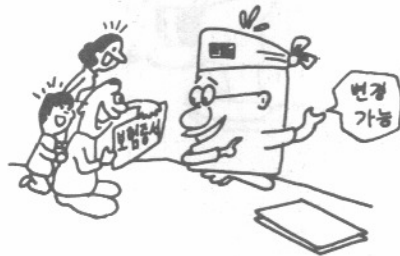
(해당 지급사유만 참조)

수령인	구비서류 지급사유	보험증권 과최종납 입영수증	주 민 등록증	도 장	해 당 진단서	비 고
보험금	만 기 · 생 존 시	○	○	○		회사통장 발행시는 증권대신 통장사용
	입원 · 장해 · 기타	○	○	○ (인감)	○	① 사망시 사망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수익자	사 망 시	○	○	○ (인감)	○	② 재해시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경찰서장 확인서 추가)
계약자	해 약 시	○	○	○		
	대 출 시	○	○	○		
대리인	(1) 상기 해당서류, 수익자(단, 해약, 계약자대출은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사용 용도) 명시 및 위임장(인감도장)을 필히 지참 (2) 대리수령인의 도장 및 주민등록증					

※ 회사는 상기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8.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계약자의 소득수준, 가족수, 기호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수익자 등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세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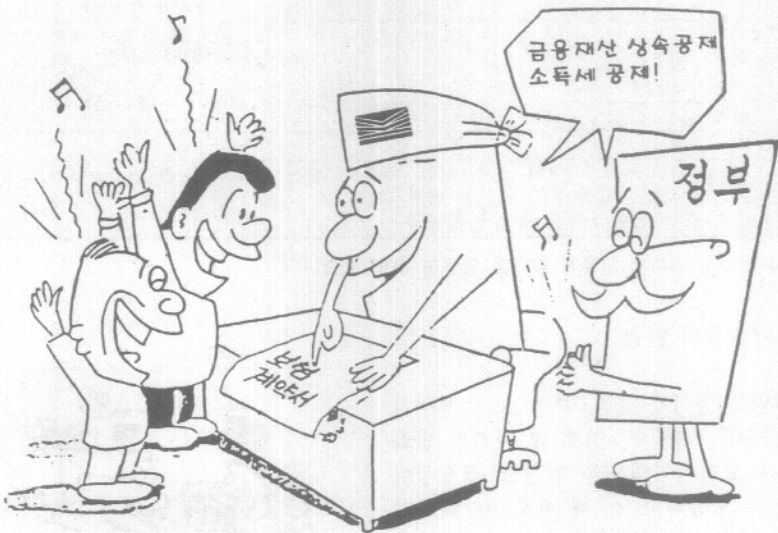
생명보험에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보험료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근로소득자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중 년 5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가 되어 소득세, 주민세의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법 제22조)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 약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17
제 2 조 (계약의 효력)	17
제 3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18
제 4 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18
제 4 조의 2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19
제 5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9
제 5 조의 2 (대표자의 지정)	19
제 6 조 (계약의 무효)	19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0
제 8 조 (배당금의 지급)	22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22
제10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23
제11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23
제12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24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24
제1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지)	25
제15조 (주소변경 통지)	25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25
제17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26
제1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26
제19조 (보험금 등의 지급)	26
제20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27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27
제21조의 2 (피보험자의 변경)	28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29
제23조 (약관대출)	29
제23조의 2 (계약내용의 교환)	29
제24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30
제25조 (분쟁의 조정)	30
제26조 (관할법원)	30
제27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30
제28조 (준거법)	30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 약관

제 1조 【 보험계약의 성립 】

-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 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 계약의 효력 】

-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 (2)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 11조 (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

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 11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4)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6)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 21조의 2(피보험자의 변경)가 적용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모집인등" 이라 합니다) 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지점,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서류, 사진, 도화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 【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1)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10.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4조의 2 【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 (1)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2)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5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7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5조의 2 【 대표자의 지정 】

- (1)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3) 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6조 【 계약의 무효 】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 7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1)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 장해연금 지급
4.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5.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 장해연금 지급
6.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만기축하금 지급

(2)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4)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종목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만을 드립니다.

(5) 제4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차액을 드립니다.

(6)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해서는 이미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전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7)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의 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제1항 제7호의 살아 있을 경우는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제 8조 【 배당금의 지급 】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9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1)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0조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 11조 【 가입자의 고지의무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은 제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고지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3)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5)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 12조 【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 보험료의 납입 】

(1)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2)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14조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수익자는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5조 【 주소변경 통지 】

- (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6조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1) 제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3)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 17조 【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 (1)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10.5%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 2조(계약의 효력), 제 4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 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8조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1)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 (재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9조 【 보험금등의 지급 】

(1) 회사는 제 1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책임준비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 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4) 이 약관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예시표" 참조)

(5) 회사는 만기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6) 만기축하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0조 【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19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10.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1조 【 계약내용의 변경 】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9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4)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21조의 2 【 피보험자의 변경 】

(1)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피보험자는 변경되는 피보험자와 같은 성(性)에 한합니다.

(2) 회사는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경우 변경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신청서(회사 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 제3항의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5)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 변경시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 2조(계약의 효력) 제2항 내지 제5항, 제 4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제 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22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23조 【 약관대출 】

-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3)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3조의 2 【 계약내용의 교환 】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 24조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5조 【 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6조 【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7조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28조 【 준거법 】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 10만원

· 10년만기, 전기월납

경과기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1,272	0	492	0
3년	3,816	1,356	1,476	529
5년	7,440	4,701	2,892	1,835
7년	11,064	8,449	4,308	3,298
10년	16,500	14,850	6,432	5,789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기준)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1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8,000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2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교통재해 장해연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3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1급 : 매월 300만원× 10년 제 2급 : 매월 150만원× 10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4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3급 ~ 제 4급 : 1,000만원 제 5급 ~ 제 6급 : 5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일반재해 장해연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5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1급 : 매월 100만원× 10년 제 2급 : 매월 50만원× 10년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6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3급 ~ 제 4급 : 600만원 제 5급 ~ 제 6급 : 300만원
만기축하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7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3년만기 : 이미 납입한보험료의 70% 5년만기 : 이미 납입한보험료의 80% 7,10년만기 : 이미 납입한보험료의 90%

※ 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V99
13. 추락	W00~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W64
16. 불의의 익수	W65~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X1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X59
25. 가해	X85~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제 외 사 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 (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비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 (윗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 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4)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